연 수 구 보 건 소

수신 관내 의료기관의장 귀하
(경유)
제목 의사 집단행동 관련 의료법 제33조제1항제3호(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적용 안내

1. 관련문서
 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1790(2024.03.19.)호,-1836(2024.03.20.)호
 나. 인천광역시 보건의료정책과-6308(2024.03.21.)호,-6309(2024.03.21.)호

2. 의사 집단 행동으로 인한 의료기관의 진료공백 심화가 우려됨에 따라, 의료인력 부족 및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의 의료행위 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현장 요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3. 이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의료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예외적용 사유(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인정 기준을 마련하여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극 적용하도록 당부하였으니, 각 기관에서는 아래 기준을 참고하시어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하여 예외 사유 적용이 필요할 경우 사전에 보건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규

의료법 33조(개설 등) ①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2.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4.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간호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나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진료를 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의료법 제33조제1항제3호 예외 사유 인정 기준 -

(적용대상)
① 수련병원 등 의료기관 소속 의료인이 의료기관 외에서 진료할 필요가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개원의가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아닌 수련병원 등에서 진료할 필요가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기타 지역여건 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행기간)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보건의료 재난 위기 '심각' 단계기간 동안 한시적 시행

끝.

연수구보건소장

주무관	**하윤경**	의약무관리담당	**김기홍**	보건행정과장	전결 2024. 3. 25. **박계정**

협조자

시행 보건행정과-4476 (2024. 3. 25.) 접수

우 2191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함박뫼로 13, (청학동, 연수보건소) / http://www.yeonsu.go.kr

전화번호 032-749-8042 팩스번호 032-749-8049 / tingeryun@korea.kr / 대국민 공개

소통의 연수, 통합의 연수, 안전한 연수